식품법B.E. 2522(1979)에 따라 제정된

보건부령 제3호[1)]

B.E. 2522(1979) 식품법 제5조 및 제16조에 따라 공중보건부장관(Minister of Public Health)은 공중보건부령(ministerial regualtion, 이하 "보건부령"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제정하였다.

1항. 식품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1) 일시적 식품 생산을 위한 경우에는 본 보건부령에 첨부된 서식 Orr.11을 사용하여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일시적 식품수입을 위한 경우에는 본 보건부령에 첨부된 서식 Orr.12를 사용하여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항. 식품에 관한 허가서로서,

(1) 일시적 식품생산을 위한 경우에는 본 보건부령에 첨부된 서식 Orr.13을 사용해야 한다.

(2) 일시적 식품 수입을 위한 경우에는 본 보건부령에 첨부된 서식 Orr.14를 사용해야 한다.

3항. 식품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1) 레시피(recipe) 등록이나 주문 검토를 위해 견본으로 사용될 식품의 생산이나 수출을 위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보건부령에 첨부된 서식 Orr.15를 사용하여 작성한 신청서를 서식 Orr.15에서 지정한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2) 레시피 등록이나 주문 검토를 위해 견본으로 사용될 식품의 수입을 위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보건부령에 첨부된 서식 Orr.16을 사용하여 작성한 신청서를 서식 Orr.16에서 지정한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4항. 3항에 따른 허가서는 해당되는 경우에 따라 서식 Orr.15 또는 서식 Orr. 16을 사용해야 한다.

5항. 본 보건부령에 따른 신청서는 공중보건부 식품의약품청 식품관리과에 제출해야 한다. 방콕 이외의 지역에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중보건부 지방보건소에 제출할 수 있다.

---

1) 1979년 11월 22일 관보 제96권/제193편/특별호 12쪽
(Royal Gazette: Volume 96/Part 193/Special Edition, page 12/22 NovemberB.E.2522(1979))

B.E. 2522(1979)년 11월 17일 제정
분쏨 마띤
공중보건부장관

[별첨]

1. 일시적 식품생산 허가 신청서.
2. 일시적 식품수입 및 식품주문 허가 신청서.
3. 일시적 식품생산 허가서.
4. 일시적 식품수입이나 식품주문 허가서.
5. 레시피 등록이나 주문 검토를 위한 견본으로 사용될 식품의 생산이나 수출 허가 신청서.
6. 레시피 등록이나 주문 검토를 위한 견본으로 사용될 식품의 수입 허가신청서.

(더 자세한 정보는 시행규칙 참조)

주석: B.E.2522(1979) 식품법 제16조는 식품의 일시적 생산 및 수입에 대해 규정하면서, 식품 레시피 등록이나 주문검토를 위한 견본으로 사용될 식품의 일시적 생산, 수입 또는 수출을 허용하며, B.E.2522(1979) 식품법 제14조나 제15조에 따른 식품의 생산이나 수입의 경우와 달리 취급한다. 또한 이와 관련한 기준 및 조건은 보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 보건부령이 제정되었다.

프롬낫(Phromnat)
2019년 2월 15일 수정